

부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3024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육오

담당변호사 이주상

변 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이 2016. 4. 이후 일자 불상경 체결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2021.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이 D은행 각 계좌(계좌번호 : E 및 F)의 별지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2021.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4. 초순경 부산 G건물 2층에 있는 ‘H’에서, 원고에게 “내가 현재 지인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투자를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지인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다음 매월 5부 이상의 이자를 주고, 차용금은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4. 12.경 동생인 피고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8.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804,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그 동안 그 중 318,000,000원 정도를 반환하였다.

나. 피고 B는 2019. 6. 21. 부산지방법원 2019고합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486,300,000원(804,300,000원 - 318,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1. 5.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804,3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동생인 피고 C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돈이 피고 C의 계좌에 입금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 B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돈을 원고로 하여금 피고 C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 C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다.

라)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돈을 피고 C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B는 피고 C에게 청구취지 기재 D은행 각 계좌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송금행위에 관항 체결된 예금주를 명의신탁하였고, 그 각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 B가 피고 C에게 위 각 계좌의 위 각 송금행위에 관하여 예금주를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가 피고 C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위 각 계좌의 위 각 송금행위에 대한 예금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

별지

지급일자	지급방식	계좌주	은행	계좌번호	금액 (원)
2016-04-12	송금				10,000,000
2016-04-25	송금				10,000,000
2016-05-09	송금				20,000,000
2016-06-10	송금				10,000,000
2016-06-14	송금				20,000,000
2016-06-22	송금				15,000,000
2016-06-28	송금				10,000,000
2016-06-28	송금				10,000,000
2016-07-11	송금				3,000,000
2016-07-15	송금				5,000,000
2016-07-18	송금				5,000,000
2016-07-25	송금				3,000,000
2016-08-11	송금				3,000,000
2016-08-26	송금				2,000,000
2016-09-09	송금				14,000,000
2016-10-10	송금				9,000,000
2016-10-26	송금				2,000,000
2016-11-21	송금				20,000,000
2016-12-01	송금				2,000,000
2016-12-05	송금				10,000,000
2016-12-05	송금				10,000,000
2016-12-07	송금				2,000,000
2016-12-20	송금				2,000,000
2017-01-06	송금				8,500,000
2017-01-20	송금				2,000,000
2017-02-14	송금				100,000,000
2017-03-08	송금				10,000,000
2017-03-16	송금				10,000,000

2017-03-30	송금				2,000,000
2017-04-26	송금				15,000,000
2017-05-02	송금				3,000,000
2017-05-16	송금				5,000,000
2017-05-19	송금				3,000,000
2017-05-22	송금				1,300,000
2017-05-31	송금				20,000,000
2017-06-05	송금				20,000,000
2017-06-16	송금				10,000,000
2017-06-28	송금				2,000,000
2017-06-30	송금				4,000,000
2017-07-07	송금				1,500,000
2017-07-10	송금				2,000,000
2017-07-16	송금				2,000,000
2017-07-17	송금				9,000,000
2017-07-25	송금				2,000,000
2017-08-07	송금				30,000,000
2017-08-08	송금				10,000,000
2017-08-21	송금				10,000,000
2017-09-07	송금				20,000,000
2017-09-20	송금				200,000,000
2017-10-16	송금				30,000,000
2017-11-27	송금				20,000,000
2017-11-27	송금				20,000,000
2017-12-26	송금				20,000,000
2018-01-03	송금				10,000,000
2018-01-18	송금				5,000,000
합계					804,300,000

